본 정보지는 육계자조금으로 제작되어
전국의 모든 육계농가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육계자조금

자조금소식 육계자조금은 국산닭고기 우수성 알리는 '첨병'

AI소식 AI 살처분 보상 상한가격 기준

닭 이야기 겨울철 관절보호엔 닭고기가 제격!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2011 2 volume 16

가축전염병 발생국 다녀온 축산인, 검역 의무화

정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공포안 의결

외국인 고용시, 당국에 신고하고 예방 교육 실시

가축 운반 차량 · 운전자는 소독과 방제복 착용 의무화

농림수산식품부내 가축전염병 기동기구 설치키로

앞으로 가축 소유자와 소유자가 고용한 근로자는 물론 가족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시 방역당국으로부터 검역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법률안은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AI,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방역당국의 방역체계의 개선함으로써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 검역의식 제고와 지자체의 방역역량 강화, 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전염병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 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했으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당국에 신고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만약 축산농자주 등의 축산관계자가 해외여행에서 입국시 검역원의 검사 · 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방역당국의 검역을 거부해 가축전염병을 발생, 전파시킨 경우에는 전염병 발생에 따른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내 가축전염병 기동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사료와 가축 운반 차량 및 운전자,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의 소독과 방제복 착용도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AI 및 구제역의 방역 및 살처분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토록 하고 기존 지자체가 부담하던 이동초소 설치 및 운영비, 방역교육비 등도 정부에서 부담키로 했다.

이번에 공포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의무 부여 등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가축방역기동기구의 설치 등과 같이 세부이행 방안 마련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세부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된 후(공포일로부터 6개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 주요 내용(공포일부터 시행)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7호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호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 · 매몰에 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제2항 : 시장 · 군수 · 구청장, 매몰 후보지 미리 선정 · 관리
제3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 · 도 가축방역기관 인력, 장비, 기술 보강 지원

[제17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3항 : 축사 등을 출입하는 수의사 · 가축 인공수정사 등은 그 차량과 탑승자에 소독
제4항 : 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는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해야 함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2항 : 방역의무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한 자의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육제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

[제22조] 사체의 처분제한
제5항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매몰지 관리실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제24조] 발굴의 금지
제1항 : 가축의 사체 등을 매몰한 토지는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

[제30조] 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제4항 :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제57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외여행에서 입국시 검역원의 검사 · 소독 등을 거부 · 기피한 자

[제60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항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 교육 · 소독을 하지 않은 자,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하는 자 중 서류 제출을 거부 · 방해하는 자, 질문 · 검사 · 소독 등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개정안 주요 내용(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제3조의 2]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3항 : 농식품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종류, 발생 국가,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
- 세부사항 농식품부령으로 정함(제4항)

[제5조]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업무
제2항 : 무역항, 공항 등의 지역에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 설치 · 운영
제3항 : 가축의 소유장 등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신고, 예방교육 및 소독 조치
제4항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시 서류 제출, 소독 등 조치함을 고지
제5항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는 국립축산방역기관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 · 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함
제6항 : 가축의 소유자 등과 동거 가족, 수의사 등도 서류 제출 및 신고 · 소독
제7항 :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소독 받은 자를 지자체에 통보
제8항 :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에게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소독을 명할 수 있음
제9항 : 외국인근로자 신고 및 출입국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함

[제7조] 가축방역관
제5항 :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 지원 강화, 교육 실시

[제9조의 2] 가축방역기동기구의 설치 등 〈신설〉
제3항 : 축사 등을 출입하는 수의사 · 가축 인공수정사 등은 그 차량과 탑승자에 소독
제4항 : 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는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해야 함

[제48조] 보상금 등
제1항 : 가축전염병 신고 수의사, 도축장을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
제3항 : 외국인 근로자고용신고 및 입국신고등 미이행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에대해서는 보상금차등 지급

[제49조 2] 심리적 · 정신적 치료 〈신설〉
제1항~제4항 : 가축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는 농장주 · 가축방역관 등에 대한 심리적 · 정신적 치료 지원
제5항 : 치료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제1항 : 지원대상에 이동통제, 교육 · 홍보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제2항 : 구제역 등 발생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 지역에 추가 지원

[제52조 2]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 〈신설〉
제1항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협조 함
제2항 : 방역 · 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 요청
제3항 : 정보 요청의 목적과 방법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AI 살처분 보상 상한가격 기준은 양계협회 양계속보 가격으로

(농식품부 고시 : 살처분 가축 보상금 등 지급요령 中)

구제역에 이어 AI(조류 인플루엔자)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가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 그러나 AI로 인한 살처분에 따른 보상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농가들이 많아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 이에 작년 2월에 개정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 장려금 지급요령'에서 AI관련 (육계) 부분을 발췌해 게재한다.

> *"육계는 2만수 이상 살처분할 경우에는 상한액의 100%를 생계안정비용으로 받는다"*

AI 살처분 보상 지원 대상 및 내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적용

닭 : 양계속보(대한양계협회 주보) 최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단, 살처분 보상가격은 산지 당해 시 · 도 평균가격으로 하되, AI 발생으로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경우 가격 조정 시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살처분 보상금평가액 상한선

축종별	구분	상한가격	비고
닭	육용실용계 - 육추 500g 포함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종계(산란용 · 육용) · 실용계(산란용 · 육용)를 구분하여 평가
	- 출하단계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종계(산란용 · 육용) · 실용계(산란용 · 육용)를 구분하여 평가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상한액 : 1천400만원(전국평균가계비의 6개월분)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개월분

AI발생 시 지원 기준액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지원한다.

수익재발생 기간 : 육계 3개월

살처분 두수에 따른 차등지원

(단위 : 만원)

살처분 두수	100~499수	500~1천수 미만	1천~3천수 미만	3천~5천수 미만	5천~7천수 미만	7천~1만수 미만	1만~1.5만수 미만	1.5만~2만수 미만	2만수 이상
육계	35	70	140	280	420	560	700	1,120	1,400

* 100마리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하되 살처분보상금액의 한도 범위내에서 지급

소득안정자금

이동제한 지역 내 사육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의 입식지연 등에 따른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지원대상 : 이동제한 전 출하하였으나, 이동제한 조치로 입식을 못한 농가와 출하지연에 따른 상품성 저하 및 정상 입식지연 농가

지원액 : 농가당 1천400만원 한도 보조지원(축산발전기금 70%, 지방비 30%)

농가당 지원기준

-경계지역 : 미입식수수×수당소득×(농가별 입식 또는 출하 제한기간/사육기간)

-역학관련 : 미입식수수×수당소득×(출하일령 초과일수 또는 출하후 미입식일수/사육기간)

-과체중손실 : 추가사육비+손실액(정상가 - 실제수취가격)

가축입식자금

살처분한 농가의 재생산 여건과 조기 경영회복을 위해 가축 입식비를 융자 지원한다.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마리수 비용을 지원한다. 축종별 병아리(중추 포함) 마리당 지원 단가는 2010년도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경영안정자금

AI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는 도축장, 부화장, 가공장, 사료업체 등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가금산물 등 수매지원 방안 검토

산지가격 하락 및 소비급감 등 필요시 수매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 AI 발생 확대로 수매 필요 시 계열업체 등을 통한 차액보상 등 병행 검토

긴급 가축방역 지원

AI 긴급방역에 소요되는 소독약품, 진단킷트, 방역복 및 긴급 방역지원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이동제한 조치로 입식을 못한 농가와 출하지연에 따른 상품성 저하 및 정상 입식지연 농가는 소득안정자금으로 농가당 1천400만원 한도에서 보조지원한다."

기타 정책지원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지원내용

-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 기금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이내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상환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한 연장 및 이자감면

- 2008년~09년 지원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상환기한 연장 및 이자감면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이내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상환도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한 연장 및 이자 감면

- 농협자체 지원금 등

지원자금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농협과 협의 · 결정

지원대상 : 이동제한 조치지역내 해당축종 사육농가

자녀학자금 감면

지원내용 : 중 · 고교 · 대학생 자녀 학자금 1년간 감면

세금감면 및 납기연장

지원내용 : 살처분 가축 가액이 총자산의 30%이상일 경우, 자산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각종 세금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6개월)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지원내용 : 질병피해농가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별도로 3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원) 내에서 기 보증부대출금 외에 추가하여 신용보증 지원

-신용조사방법도 간이신용조사 방식을 적용, 절차 간소화

지원방법 :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 신용보증에 따라 자동 적용

* 단, 농신보 보증은 농협에 한정하여 적용, 농협이외 타 금융기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농신보와 약정 등 관련 조치 요구

해외여행 후 입국시 공항만에서 소독 등 조치를 받지 않은 농가 정책자금 등 지원배제

대상자금 : 농업부문 지원 정책자금

지원 배제대상 :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 미신고자(1월13일자로 본회의 통과된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신고의무 미이행자)

※적용시기 : 2011년 사업부터 적용(단, 1월13일자로 본회의 통과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

조기지원 방안

살처분보상금

보상평가반의 평가여부와 상관없이 보상금액을 추정한 후 추정금액의 50%를 빠른 시일내에 가지급하며, 추후 정산 처리한다.

생계안정자금

생계안정자금은 지자체가 농가별로 살처분 사육두수를 파악하여 신청 즉시 축종별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한다.

-살처분 후 농가신청이 있을 경우, 3개월분 선지급

지원제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가축 소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 1항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은 우역 · 우폐역 · 구제역 · 돼지열병 ·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가축의 소유자가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질병에 걸린 가축을 발견하고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③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④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 알(卵) 생산 잔존가치를 보상받는 닭 · 오리 · 메추리 소유자.

> "질병에 걸린 가축을 발견하고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돼 주의령 발령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야생조류 출몰지역 등 출입금지 당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야생 청둥오리 등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검출 되고 있어 야생조류 주의령을 발령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전국 익산시 만경강 유역, 충남 서산시 천수만 일대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야생 청둥오리 등 40수와 분변 44점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철새 도래지 및 서식지, 저수지, 하천, 습지 등 오염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고 농가 자율방역을 강화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농가들은 우선 가금농가의 철새도래지·서식지 등 야생조류 출몰지역(저수지·하천·습지 및 인근 논·밭 등)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 하게 출입할 경우 철저하게 세척·소독을 실시(신발·의복 등)토록 했다. 그리고 축사 그물망 설치·주변 청소 등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고, 가금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및 소독을 실시도록 했다. 또한 1일 2회 이상 축사 내·외 소독실시, 모든 축사 출입구 소독조 설치, 축사 내 전용신발을 두고 축사 내에서는 그 신발만 사용하고, 특히 도보로 외출할 경우, 같은 복장·신발을 신고 축사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의심축 발견시 반드시 신속하게 신고(1588-4060, 1588-9060)도록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충남 천안, 전북 익산 등 닭, 오리에서 발생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99.7%의 유전자 일치율을 보임에 따라, 야생조류(분변 포함)에 대한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국내에 도래하여 월동하고 있는 일부 철새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되어 있어 가금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야생조류 주의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야생조류 등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지역은 △ 전북 익산시 만경강 유역(청둥오리,야생조류분변) △ 충남 서산시 천수만 일대(수리부엉이) △ 전남 해남군 산이면/해남읍(가창오리) △ 경남 사천군 용현면/신벽동(청둥오리,원앙) △ 충남 천안시 풍세천(야생조류분변) △ 충남 아산시 인주면(야생기러기) △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큰고니) 등 11곳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으로 확산 조짐

전국 5개 시 · 도 14개 시 · 군에 걸쳐 총 37건 AI양성 판정

구제역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고병원성 AI발생 및 방역상황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지난 해 12월 29일부터 1월 25일까지 AI 의심축에 대한 검사결과 총 78건 중 '고병원성 AI(H5N1)으로 확진된 것은 5개 시 · 도 14개 시 · 군에 걸쳐 총 37건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볼 때 전남이 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영암 · 나주 17건, 여수 · 장흥 · 화순 · 보성에서 각 1건)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안성(4건) · 이천(3건) · 파주(1건) · 양주(1건)에서, 충남은 천안(4건) · 아산(1건)에서, 전북은 익산(1건)에서, 경북은 성주(1건)에서 발생되었다.

아울러 현재 오리(영암 · 파주 · 보성) 및 메추리(고창), 종계(평택), 꿩(평택) 농가의 의심축 신고(7개소)에 대하여 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이로써 25일 현재 AI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총 78건에서 양성 확진 37건, 음성 판정 34건, 검사 중 7건으로 나타났고 AI로 인한 피해 가금류의 살처분 규모는 226농가에서 약 510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AI가 주로 철새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발생 이후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 및 발생농가와 같은 차량으로 왕겨를 공급받는 농가를 통해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농가들에게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미 지난 1월 12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Yellow)' 단계에서 '경계(Orange)' 단계로 격상하고 AI발생지를 중심으로 이동통제초소(200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몰처분도 함께 진행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차단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살아 있는 닭 · 오리를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1월 12일까지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13일부터 27일(15일간)까지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 이는 2008년 AI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었던 도축장 이외 살아 있는 닭 · 오리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닭 · 오리 및 계란 운반 차량은 시 · 도에 '전용운반차량'으로 신고를 한 후 '전용운반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운영하도록 하고, 닭 · 오리 도축장(52개소)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소독조치(온수로 오물 등을 완전히 세척 후 차량 내 · 외부 소독)토록 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을 상주시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AI가 철새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41개 주요 철새도래지에 군 제독차량 등 42대를 동원해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으며, 전국의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금농장 출입차량(사료, 왕겨, 동물약품 등)에 대해서는 차량 및 기사에 대해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출입구 앞 별도 장소에서 농가의 자체 차량 등에 적재한 후 농장내로 운반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AI 모두 농가 스스로의 방역노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가금 농가들이 우선 축사내 전용신발을 두고 축사 내에서는 그 신발만 사용하고,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지하며, 가금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조류 인플루엔자)

전국 AI 발생지역 현황

2011년 1월 25일 기준

육계자조금은 국산닭고기 우수성 알리는 '첨병'

국산닭고기인증사업 통해 수입산과 차별성 소비자에게 각인

지난해 소비자연맹이 전국 주부 1천3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부들은 닭고기를 구입할 때 국내산인지의 여부를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82%에 가까운 설문 응답자들이 닭고기 구매시 원산지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으로 꼽은 것이다. 국내산 닭고기 선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치킨배달점 원산시 표시 의무화 제도에 의해 더욱 탄력을 받았으며 대한양계협회의 국산닭고기인증제 사업 실시로 한층 고조되었다.

글 편집부

육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산 닭고기 인증제도

국산 닭고기 인증제도는 수입산과의 차별화, 둔갑판매 방지, 국산 닭고기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육계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사업으로 국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과 도계장,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양계협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학계, 생산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산 닭고기인증위원회는 인증 희망 업체에 실사를 거쳐 국산 닭고기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1월 27일 현재 1, 2차에 걸쳐 총 11개 업체(처갓집 양념통닥, 아주커 치킨, 굽네치킨, 구어좋은 닭,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들판, 사바사바치킨, 두리아, 꾸꾸루꾸, 오븐에 빠진 닭, 에코윌 등)가 인증마크를 달았다. 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1년 동안 판매점과 배달용 포장박스, 포장지 등에 국산 닭고기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대한양계협회는 국산 닭고기 인증제의 도입 효과와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산 닭고기 인증제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가 스스로 마련한 '신뢰' 마크

소비자들의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지금, 육계농가 스스로 납입한 자조금 사업비로 '신뢰' 마크를 직접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이 인증제도는 매우 시의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록 지금은 인지도가 타 축종의 인증사업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만 소비자들이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만으

로 닭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산닭고기인증제 사업이 그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 닭고기 인증제 사업의 순항은 육계자조금사업이 이뤄낸 여러 성과 중 하나에 불과하다. 육계자조금사업을 통해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조사연구사업 소비홍보사업 등이 활발하게 전개됐었다.

지난해 육계자조금 사업 활발하게 진행돼

먼저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으로는 전문 육계CEO과정 교육, AI 대비 전국양계인대회 및 육계인대회 등 각종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이 실시되었다. 비록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은 구제역 발생으로 도중에 취소되었지만 이들 각종 교육과 모임을 통해 육계농가가 전문 CEO로 자질과 지식을 함량하고 FTA 등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확보 방안과 육계산업 발전방안 등을 모색해왔다.

소비홍보사업으로는 TV와 라디오에서 국산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TV광고를 제작, 방영함으로써 국산 닭고기의 이미지 제고,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8월 제작된 국산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는 가수 진미령과 개그우먼 송은이가 TV광고의 모델로 출연해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QOOK TV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었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행사로 닭고기 먹는 날 행사가 각 지역별로 실시되어 농가들이 직접 지역 소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농가 결집과 자발적 참여 절실

또 하나의 커다란 결실은 평소 농가들이 숙원해 마지않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조사연구용역 실시다. 사육비의 적정성 조사연구, 표준계약서 제정에 관한 연구, 병아리 이력제 연구,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대한 연구용역 등 우리 농가가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사안들에 대한 연구가 육계자조금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연구용역을 통해 그동안 계열회사와 사육 농가를 끊임없이 대립하게 만들었던 병아리 품질 문제 책임 전가의 적정성, 생산기반도 양극화, 계약서의 불공정 문제의 해답을 찾고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면 육계산업 기반은 더욱 공고하게 다져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2기 대의원회에서 육계자조금 거출금은 육계 기준으로 5원에서 3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거출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전체 농가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결정이었으며, 실제로 육계자조금 납부율은 아직 10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조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농가들의 결집과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육계자조금사업의 성공 여부가 우리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2011년 신묘년에는 100% 자조금납부에 동참함으로써 육계자조금사업이 육계농가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이름으로 각인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 *"육계자조금사업의 성공 여부가 우리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2011년 신묘년에는 100% 자조금납부에 동참해야 한다."*

겨울철 관절보호엔 닭고기가 제격!

닭날개, 닭발에 많은 콜라겐, 관절염 예방에 효과

관절염은 성인 6명중 1명이 앓고 있는 매우 흔한 질병으로 특히 추운 겨울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신체활동이 적어지고 몸이 둔해져 관절염이 더욱 심해진다고 한다. 평소 꾸준한 운동을 통해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관절을 보호하긴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닭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다. 닭고기의 (닭)날개와 (닭)발에는 콜라겐이란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관절병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관절을 보호하는 콜라겐

콜라겐은 뼈, 연골, 힘줄, 인대, 피부 등을 구성하는 단백질군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는 교원질이라고도 한다. 교(膠)는 끈끈하다는 뜻이고 원(原)은 근원이 된다는 뜻으로 교원질은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 뼈대를 이루는 근원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콜라겐의 함량이 50%가 넘는 연골은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몸을 움직일 때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여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 관절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콜라겐, 닭날개와 닭발에 많이 함유돼 있어

콜라겐이 풍부한 식품으로 닭날개와 닭발을 빼놓을 수 없다. 닭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콜라겐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므로 여성들의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고 노인들의 관절염 예방에 좋아 겨울철에 많이 먹는 것이 좋다. 특히 콜라겐은 일반적으로 식사만으로는 충분한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외선과 노화 등으로 자연적으로 소실되기 때문에 미용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별도로 섭취해 줘야 한다.

닭고기 속 콜라겐, 관절염 치료제에 비견된다는 연구도 있어

닭고기에 들어있는 콜라겐 성분이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중국 안휘대학 의대 링 링장 박사팀은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들에 대한 닭고기 속 콜라겐의 효과를 평가한 논문 발표에서 닭고기에서 추출한 콜라겐 성분이 대표적인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메토트렉세이트와 비슷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밝혔다.

링 박사팀은 총 236명의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무작위로 2개 그룹으로 나눈 뒤 24주 동안 각각 닭고기 추출 2형 콜라겐을 1일 0.1mg씩 섭취토록 하거나 메토트렉세이트를 주당 10mg 복용토록 하는 방식의 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두 그룹 모두에서 통증과 뼈가 경직되는 증상이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통증이 나타나는 관절의 숫자도 감소했음이 눈에 띄었다.

실질적인 효과는 치료제가 약간의 우위를 나타냈지만 부작용과 그 정도는 콜라겐 섭취그룹에서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운 느낌과 맛을 즐기는 퓨전 닭고기 요리

중국식 양념통닭 & 닭고기 퓨전 수제비

같은 재료라 할지라도 나라별로 요리 방법이 서로 다르면 전혀 새로운 요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패션업계에서 성별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 듯이 요리에서도 각 나라의 독특한 요리방식이 합쳐진 퓨전요리가 어느 새 우리에게도 자리하고 있다. 퓨전 요리의 장점은 각 음식의 장점만을 흡수해 그 동안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새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번호에서는 닭고기를 이용한 퓨전요리를 소개해본다.

중국식 양념통닭

재 료

닭 1마리, 청주 2큰술, 다진땅콩 1/4컵, 녹말 2큰술, 계란 1개, 치킨가루(닭분말육수) 1작은술, 소금, 후추, 식용유, 소스(케첩 4큰술, 설탕 3큰술, 식초 2큰술, 고추기름 1큰술, 두반장 1큰술, 다진파 1/2큰술, 다진마늘 1/2큰술, 다진마늘 3큰술, 다진생강 1큰술, 간장 1큰술, 소금, 후추)

만들기

1. 닭은 깨끗이 씻고 물기를 닦아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을 낸 다음 청주,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 30분 정도 재워 두었다가 치킨가루, 계란, 녹말을 넣고 버무려 1시간 동안 재운다.
2. 170℃로 끓는 식용유에 ①의 닭을 넣어 두 번 튀긴다(튀김으로 먹어도 좋다).
3. 소스는 팬에 고추기름, 마늘, 파를 넣어 볶다가 나머지 소스양념을 넣고 볶으면서 ②의 튀긴 닭을 넣고 버무려 접시에 담아 다진 땅콩을 뿌린다.

닭고기 퓨전 수제비

재 료

닭(작은 것) 1마리, 밀가루 2컵, 감자 1개, 양파 1개, 호박 1/2개, 느타리버섯 100g, 대파 1대, 다진마늘 1큰술, 깨소금 1큰술, 신김치, 참기름, 소금, 후추, 청주

만들기

1. 닭은 끓는 물에 파잎, 양파, 소금, 청주를 함께 넣고 40분~1시간 동안 삶은 후에 살을 가늘게 찢어 놓는다.
2. 신김치는 양념을 털고 잘게 썰어 물기를 꼭 짠다.
3. 넓은 그릇에 ①을 담고 ②의 김치를 섞어 깨소금, 소금, 후추로 간을 한다.
4. ③의 소를 넣어 닭고기 만두를 빚어 놓는다.
5. 감자, 호박은 0.5cm두께로 썰고 느타리버섯은 찢어 놓은 다음 양파, 파도 썰어 놓는다.
6. ①의 닭 삶은 물에 감자를 넣고 절반 가량 익으면 닭고기 만두, 느타리버섯, 양파, 호박을 넣고 끓이다가 소금, 마늘, 파, 후추로 간을 맞추어 수제비를 끓여낸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축산농가에서 지켜야 할 일

▲ 차단방역 : 출입자 · 출입차량 철저히 소독

▲ 야생조류 출입차단 : 문단속 그물망 설치

▲ 농장소독 : 철저한 소독, 살충과 쥐잡기

■ 2~3회/주 축사와 주변 소독 철저

▲ 발생국 여행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 부득이하게 여행한 경우 신발세척,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후 귀가

야생동물의 가금류 접촉방지

- 사육시설, 사료보관시설의 야생조류 침입 방지 그물망 설치, 창문 닫음
- 사육농장 주변 및 경계에 생석회 도표
- 사육시설 주변의 먹잇감 제거 등 청결 유지
- 쥐 및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 철새도래지 · 야생조류 서식지 방문 자제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지역) 방문 금지

농장차단방역 질병유입 방지

- 농장 출입구는 1개소는 제한하고 출입 통제
- 농장출입 사람 · 차량은 전문약제로 소독 철저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장 · 행사장 · 모임 등 출입금지
- 발생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2주 이상 농장에 출입을 금지함.

닭 사료 운반차량은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사료 제조업체 및 운반자 준수 사항

- 닭과 오리의 사료는 반드시 구분하여 공급하고, 오리 사료 운반차량의 닭농장 출입을 금지함
- 사료공장 · 대리점 · 농장 출입 때마다 소독 실시
- 시도 발급 지정서를 차량에 비치하고 '전용차량 스티커'를 조수석 전면유리 하단에 부착한 후 운행

농가 준수 사항

- 사료전용차량지정서 미소지 및 '전용차량 스티커' 미부착 사료운반차량의 농장출입을 차단할 것
- 아울러, 지정서 및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시군 등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 지정서 소지 및 스티커 부착차량의 농장 출입시 소독을 실시
- 자가 트랙터 · 경운기 등 사료 운반수단을 마련하여 농장 또는 마을입구에서 축사까지 사료 직접 운반

운반업체 및 운반자 준수사항

- 닭 운반자는 시도로부터 지정승인은 불필요하나, 닭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 부착 후 운행
- 어떠한 경우에도 닭 운반차량의 오리운반과 오리 운반차량의 닭 운반을 금지함
- 차량에 시 · 도 발급 전용차량지정서를 비치하고 전면유리 조수석 하단에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 부착 후 운행
- 농가 도착시 '전용차량 지정서'를 제시하고 출입시 소독 실시
- 운반자는 상차 등을 이유로 축사내부에 들어가지 말 것
- 도계장 도착시 '전용차량 지정서'를 제시하고 출입시 소독 실시

닭 · 오리 농가 준수사항

- 닭 농가는 '닭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만 확인
- 전용운반차량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농장진입을 차단하고, 시 · 군 등 방역당국에 신고
- 운반차량은 반드시 소독실시 후 출입을 허용하되, 운반자의 축사내부 출입을 금지할 것
- 농장 자체 운반시 시도(시군)에 신고 후 차량에 스티커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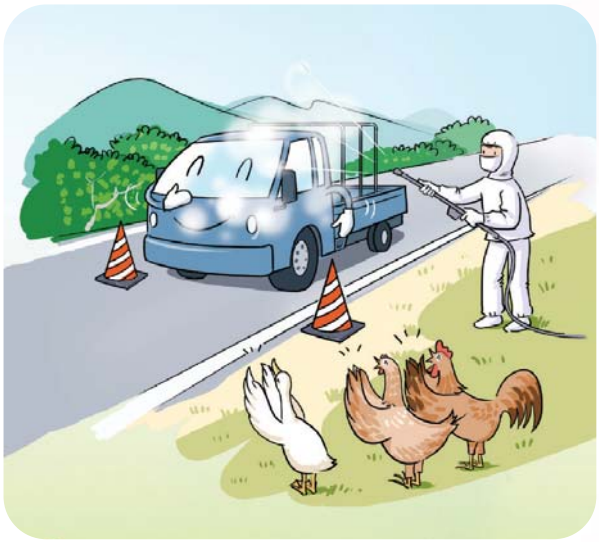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1년 1월호(15호) 8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철저 당부' 기사중 '고병원성 AI신고검사 현황 및 조치사항(12월 31일 현재)' 도표중 3번 12.31, 11:50 전국 익산시 낭산면 닭(토종닭), 50,000수 농가는 음성으로 확인됐음을 알려 드립니다.

육계자조금

비매품 / 제3권 제2호 통권16호 / **등록번호** 서초 라00269 / **발행** 2011년 2월 15일 / **발행인겸 편집인** 이준동 / **발행처** (사)대한양계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5층, Tel : (02)588-7651, Fax : (02)588-7655 / **인쇄처** 삼원정판사 / **편집** 인포아트 /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Tel : (02)585-9974 Fax : (02)585-3548

국산 닭고기 인증제 실시

「국산 닭고기 인증제」는 닭고기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안정적인 소비 촉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가
국산 닭고기를 취급하는 닭고기 외식업체 및 전문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산 닭고기 인증제」는 육계자조금 사업으로 (사)대한양계협회가 사업을 운영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농식품부 · 소비자시민모임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증의 가치와 공정성이 높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